

사회복지법인 유은(唯恩)복지재단
2019년도 2 차 임 시 회 의 록

- * 일 시 : 2019년 11월 29일 (금요일) 11:00
- * 장 소 : 유은복지재단 문화관 회의실 (경북 안동시 남선면 지골길 18)
- * 임원총수 : 이사 7명, 감사 2명
- * 참석임원 : 이*만 대표이사, 임*진 이사, 장*환 이사, 고*나 이사,
김*애 이사.
- * 불참임원 : 박*공 이사, 장*준 이사, 권*서 감사, 이*수 감사.

I 부 예 배

- * 일 시 : 2019년 11월 29일 (금요일) 11:00 ~ 11:10
- * 인 도 : 이*만 목사
- * 찬송가 198장을 다 같이 부른 후, 장*환 이사로 기도케 하다.
- * 임*진 목사가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를 봉독하고 '영생의 양식'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한 후, 기도에 이어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.

II 부 회 의

- * 일 시 : 2019년 11월 29일 (금요일) 11:10 ~ 11:55
- * 사 회 : 이*만 대표이사

1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: 권*규 사무국장이 재적 임원 총 9명 중 이사 5명 출석하였음을 보고하자 정관 제26조(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에 의거 개회정족수가 됨에 따라 의장인 이*만 대표이사가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 (이하 '본 재단'이라 한다) 2019년도 2차 임시이사회 의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말씀을 하다.

2. 전회의록 낭독 : 이*만 의장이 권*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2019년도 04월 26일 채택 된 2019년도 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게 하다.

3. 경과보고 : 권 * 규 사무국장이 2019년도 1차 임시이사회 이후 본 재단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(이하 '본 시설'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[별첨자료 1]의 서면 및 구두로 경과를 보고하다.

4. 안건상정 : 이 * 만 의장이 본 재단 및 본 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자 임 * 진 이사의 동의와 장 * 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다.

제 1호 : 보통재산(차량) 폐기처분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제 2호 : 유은복지재단 시설(창고) 증축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제 3호 : 기타 안건 심의 · 의결의 건

5. 심의 · 의결사항

1) 안건 제 1호 : 보통재산(차량) 폐기처분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이 * 만 의장이 상정하여 미리 나누어 준 [별첨자료 2]의 보통재산(차량) 폐기처분 사항에 대하여 스타렉스 차량(2003년식, 경북71거6551)이 정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으로써, 노후화와 하체 부식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며, 본 차량으로 출·퇴근 운행 시 근로장애인들의 안전상에 위험이 있어 차량을 폐차하고자 함을 권 * 규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,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,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임 * 진 이사의 동의와 김 * 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2) 안건 제 2호 : 유은복지재단 시설(창고) 증축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이 * 만 의장이 상정하여 미리 나누어 준 [별첨자료 3]의 본재단 시설(창고) 증축에 대하여 신선편의식품 제조공장 부자재보관창고(주6동), 42.00㎡, 구재배동 입구 비가림막(부4동) 10.08㎡의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함을 권 * 규 사무국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,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아들일 것을 고 * 나 이사의 동의와 장 * 환 이사

의 재청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승인하다.

6. 회의록채택 : 이상으로 심의·의결된 안건들의 정확무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*만 의장이 작성된 회의록을 권*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낭독케 하니, 수정 보완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채택할 것을, 임*진 이사의 동의와 고*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7. 폐회선언 :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·의결되었으므로 폐회할 것을 장*환 이사의 동의와 김*애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, 이*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* 기록자 : 사무국장 권*규 (인)

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.

2019년 11월 29일

사회복지법인 유은(唯恩)복지재단

대표이사	이	*		이	사	임	*		
이	사	장	*		이	사	고	*	
이	사	김	*						